

## 건설기계 점검·정비견적서

건설기계 소유자	등록번호		건설기계명 (기종)		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	km hr	
	등록년월일		차대번호				
	소유자(상호)		주소				
건설기계 정비업자	사업자 등록번호		정비업 등록번호				
	업체명 및 대표자	(서명 또는 인)					
	주소	(전화번호: )					
	견적 구분	[ ] 보험 [ ] 일반					
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.							
견적 내용		부품 내역				공임	합계
		코드	수량	단가	계		
구분(보험·일반)	부품	공임	계	부가가치세	총액		
<p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점검·정비견적서를 발급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작성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표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</p>							
1.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. 2. 본 견적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. 3.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비를 의뢰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정비를 의뢰한 자가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급합니다. 4.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. 5. 부품가는 견적일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 ※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, 건설기계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							